

##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및 건축범위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-323호(1994.10.07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-233호(1999.08.04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로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및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번지 우촌초등학교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 (☎2241-276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.

2015년 3월 26일

### 성 북 구 청 장

가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변경결정 취지

-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구획정리완료로 인한 지적면적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면적을 변경하고,
- 성북구 돈암동 609번지 우촌초등학교에서 급식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 결정된 건축범위(높이)를 변경결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변경결정 조서

-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시설결정 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학 교	초등학교	서울시 돈암동 609번지	3,998.0	감)5.9	3,992.1	서고시 제1994-323호 (1994.10.07)	도면변경 없음

- 건축범위 변경결정 조서
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(층)		건축제한 완화	비 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기정	변경		
35	35	150	150	6	7	-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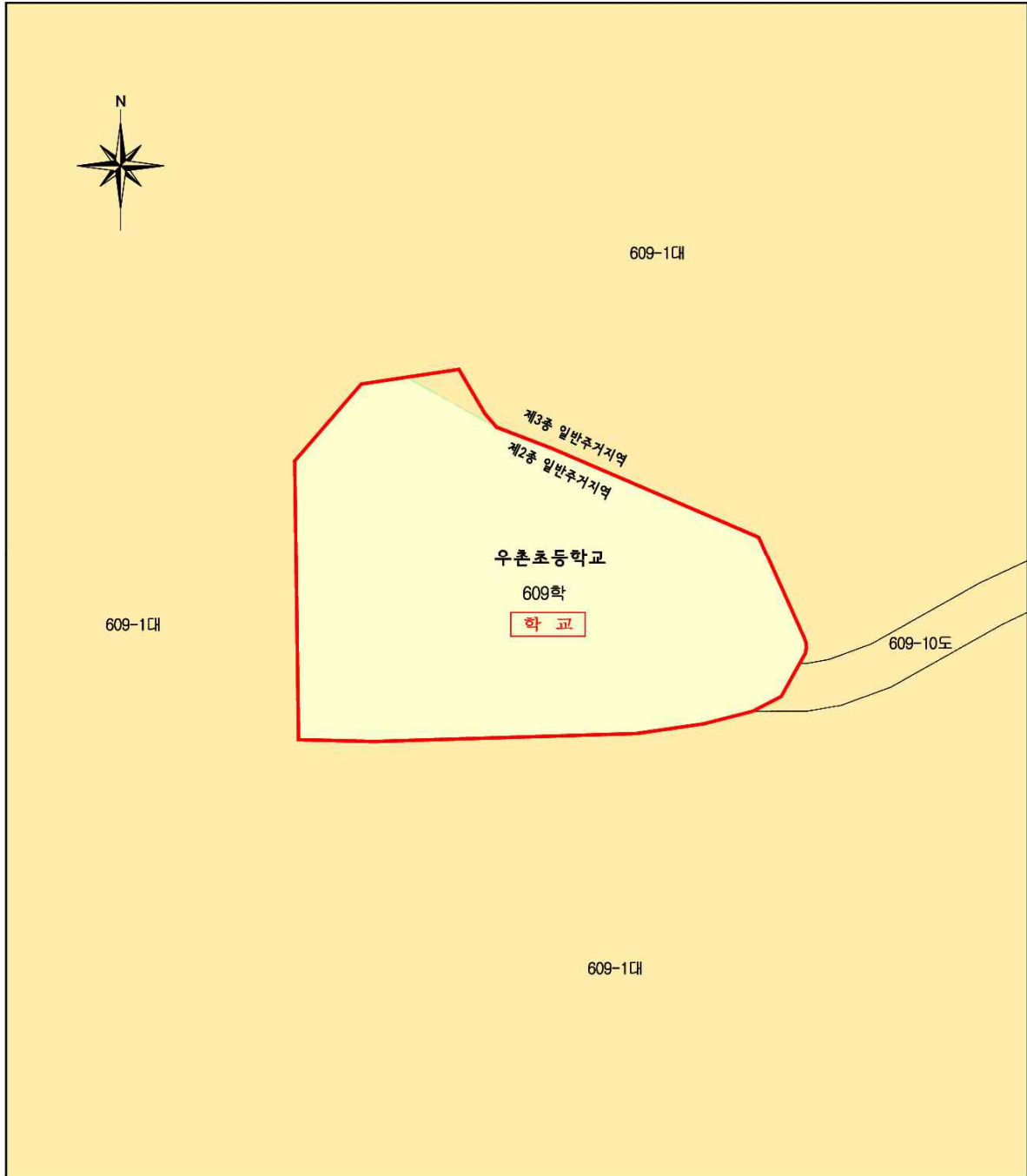
※ 교사2동에 한해 높이변경 함.

다. 관계도면 : 도시계획시설(학교) 및 건축범위결정도 첨부

- 아래의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변경)도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번지 (우촌초교)



###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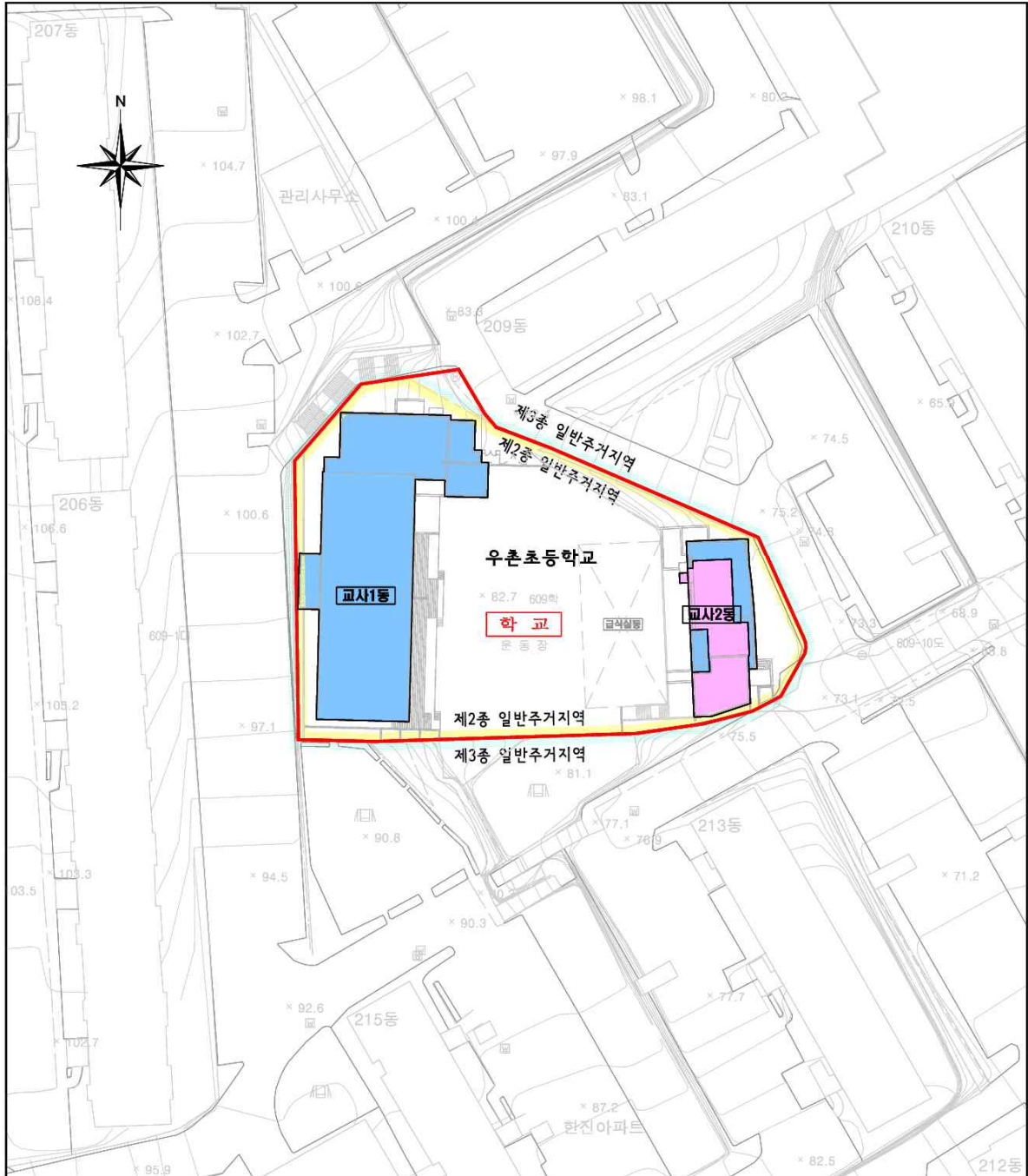
구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변경	학교	초등학교 (우촌초교)	성북구 돈암동 609번지	3,998.0	감) 5.9	3,992.1	서울특별시 제1994-323호 (1994.10.07)	구획정리에 따른 변경 (도면변경없음)

범례	
	지적선
	결정고시선
	제2종 일반주거지역
	제3종 일반주거지역

※ 기 고시면적 3,998㎡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9-233호(1999.08.04)임.

# 건축범위 결정(변경)도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번지 (우촌초교)



■ 건축물의 범위 변경결정 조서

건축물의 범위						비 고
건폐율(%)		용적률(%)		높이의 범위		
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기 정	변 경	
35	35	150	150	6층	7층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)

**범 레**

- 결정고시선
- 기존 건물
- 증축 건물 (6층→7층)

※ 기 건축범위 결정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-442호(2007.12.06)임.